

# 2025 플랫폼 후속지원 공모기간 연장 안내

## □ 플랫폼 후속지원 공모 변경사항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공모 기간 연장	2025년 3월 13일(목) ~4월 1일(화) 17:00까지	2025년 3월 13일(목) ~4월 14일(월) 17:00까지
공모 조건 변경	2025년 4월 ~ 2025년 12월 중 개최 및 종료되는 사업	2025년 5월 ~ 2025년 12월 중 개최 및 종료되는 사업

## □ 연장공모 개요

- (공 모 명) 2025 플랫폼 후속지원 공모
- (공모기간) 2025년 3월 13일(목) ~ 4월 14일(월) 17:00(예정) \*총 33일
- (지원장르) 공연예술전반(연극, 무용, 음악, 다원, 거리예술, 전통예술 등)
- (공모대상) 센터 해외진출 플랫폼 사업(2022년-2024년 서울아트마켓 PAMS Choice, PAMS Pitching, 저니투코리아뮤직 쇼케이스) 선정 후, 해외 기관 후속 초청 예정인 공연예술·전통예술 단체 및 공연 작품
  - \* 공연단체 및 공연작품(레퍼토리)의 유효성을 고려, 2022~2024년 선정단체 및 작품을 대상으로 함
  - \* PAMS/저니투코리아뮤직 선정단체의 경우, 공모 선정된 작품을 활용·발전시킬 경우에 한하며, 장르의 특성에 따라 작품의 변동 가능
- (공모조건) 2개 이상의 해외기관에 초청받아 투어를 진행하는 국내 예술단체
  - \* 투어는 출국 이후, 2개 이상의 다른 공연장 혹은 축제에서 연속적으로 공연 하는 것을 의미함
  - \* 2025년 5월 ~ 2025년 12월 중 개최 및 종료되는 사업에 한함
  - \* 해외 초청 측이 한국 공연예술단체에게 공연료를 포함한 합당한 초청조건을 제시·이행하는 사업에 한함
- (지원내용) 한국단체의 국외여비 일부, 홍보마케팅 및 프로모션 비용 (1개 단체당 최대 3천만원 지원)

- 국외여비(항공료, 코로나19검사비, 비자발급비) 및 일반수용비(화물운송료)
- 공연예술단체 및 작품 홍보마케팅 비용(해외 마켓 참가 및 홍보, 피칭 진행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)
- 자부담 사업비(전체 사업비의 최소 10% 이상) 편성 필수
- 지원금 책정 기준

<b>화물 운송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화물운송비:</b> 총 용량 100kg 이상 화물 신청 시 책정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문운송화물: 운송업체의 직인이 포함된 견적서 제출필수, 견적서의 50% 책정</li> <li>② 항공위탁수하물: 권역별 항공금액 최고등급을 부여하여 항공금액 산출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항공료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항공비:</b> 권역별 항공기준금액 X 투어인원(심사위원 인정 인원수만큼 책정)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국제항공료는 한국↔해외 왕복구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</li> </ul> </li> <li>• <b>지원 항공료 기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한국↔해외 왕복구간 지원 원칙 (항공기준금액 X 투어인원)</li> </ul> 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 간</th> <th>항공기준금액(최저~최고)</th> <th>산출기준액(1인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중남미</td> <td>2,900,000-3,100,000원</td> <td><b>3,1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북 미</td> <td>2,500,000-2,700,000원</td> <td><b>2,7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동유럽</td> <td>1,900,000-2,100,000원</td> <td><b>2,1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서유럽</td> <td>1,900,000-2,100,000원</td> <td><b>2,1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북유럽</td> <td>2,000,000-2,200,000원</td> <td><b>2,2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중동</td> <td>2,600,000-2,800,000원</td> <td><b>2,8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아프리카</td> <td>2,700,000-2,900,000원</td> <td><b>2,9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오세아니아</td> <td>2,600,000-2,800,000원</td> <td><b>2,8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서남아시아</td> <td>1,900,000-2,100,000원</td> <td><b>2,1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동남아시아</td> <td>1,000,000-1,200,000원</td> <td><b>1,200,000</b></td> </tr> <tr> <td>동북아시아 (중국, 일본, 홍콩, 대만, 몽골 등)</td> <td>700,000-900,000원</td> <td><b>900,000</b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성수기 또는 국제 정세로 인한 항공료 상승의 경우,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음</p>	구 간	항공기준금액(최저~최고)	산출기준액(1인)	중남미	2,900,000-3,100,000원	<b>3,100,000</b>	북 미	2,500,000-2,700,000원	<b>2,700,000</b>	동유럽	1,900,000-2,100,000원	<b>2,100,000</b>	서유럽	1,900,000-2,100,000원	<b>2,100,000</b>	북유럽	2,000,000-2,200,000원	<b>2,200,000</b>	중동	2,600,000-2,800,000원	<b>2,800,000</b>	아프리카	2,700,000-2,900,000원	<b>2,900,000</b>	오세아니아	2,600,000-2,800,000원	<b>2,800,000</b>	서남아시아	1,900,000-2,100,000원	<b>2,100,000</b>	동남아시아	1,000,000-1,200,000원	<b>1,200,000</b>	동북아시아 (중국, 일본, 홍콩, 대만, 몽골 등)	700,000-900,000원	<b>900,000</b>
구 간	항공기준금액(최저~최고)	산출기준액(1인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남미	2,900,000-3,100,000원	<b>3,1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북 미	2,500,000-2,700,000원	<b>2,7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유럽	1,900,000-2,100,000원	<b>2,1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유럽	1,900,000-2,100,000원	<b>2,1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북유럽	2,000,000-2,200,000원	<b>2,2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중동	2,600,000-2,800,000원	<b>2,8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아프리카	2,700,000-2,900,000원	<b>2,9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오세아니아	2,600,000-2,800,000원	<b>2,8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서남아시아	1,900,000-2,100,000원	<b>2,1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남아시아	1,000,000-1,200,000원	<b>1,2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북아시아 (중국, 일본, 홍콩, 대만, 몽골 등)	700,000-900,000원	<b>900,000</b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홍보 마케팅 및 프로모션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연단체의 해외 진출을 위한 홍보물 제작(영상, 카탈로그, 팸플릿, 포스터 등), 마켓 참가 등록비·부스 운영비, 해외 언론지 리뷰 게재 등 홍보마케팅, 프로모션 소요 예산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해외기관의 초청을 받아 진행하는 2곳 이상의 투어 외, 추가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한 마켓 참가 시 홍보마케팅 예산 책정 가능하며, 공모지원신청서 내 홍보 마케팅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○ (공모우대 사항)

- 초청기관의 해외 파급효과 및 기여도 높은 사업
- 투어 장소의 수와 공연 횟수가 많은 사업

○ (결과발표) 2025년 4월 3주~4주 (예정)

## □ 신청 및 접수방법

- (공모기간) 2025년 3월 13일(목) ~ 4월 14일(월) 17:00(예정) \*총 33일
- (제출서류 및 신청방법)

<b>제출 서류</b>	<b>1. 필수제출 서류</b> 1) 플랫폼 후속지원 공모 신청서 1부 2) 초청장(초청조건 명시) 또는 공연계약서 사본 1부 * 초청조건 : 공연료, 공연 횟수, 공연장소 3)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)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(공모 신청서 내 양식 포함) 5) 화물운송 견적서(해당 시)  <b>2. 선택제출 서류</b> 1) 단체 성과자료 (A4 5페이지 이내, 사진 10매 내외) * 동영상의 경우 신청서 내 링크 첨부
<b>신청 방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 이메일 <a href="mailto:csk@gokams.or.kr">csk@gokams.or.kr</a> 로 이메일 접수</li><li>* 메일 제목 : '단체명' 2025 플랫폼 후속지원 공모</li><li>• '플랫폼 후속지원 공모신청서'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, 기타 필수제출서류와 함께 압축하여 이메일로 송부</li><li>• 개인 아닌 단체만 신청 가능 (단체는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를 의미함)</li><li>•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 불가</li></ul>

## □ 심사 및 선정

- (심사내용)
  - (행정검토) 지원 가능대상 여부 및 첨부서류 제출현황 검토
  - (서면심사) 신청서를 토대로 심사위원(외부전문가 3~5인) 서면 심사, 지원여부 및 지원금 확정
- (심사기준)
  - 참가지원 기준을 증빙하는 명확한 서류
  - 사업의 목적·목표에 맞는 추진계획 및 실현가능성 여부 고려
  - 참가행사의 해외시장 영향력 및 선정단체의 해외진출 역량
  - 센터 해외진출 플랫폼 사업(서울아트마켓 PAMS Choice, PAMS Pitching, 저니 투코리아뮤직 쇼케이스 지원) 선정자의 후속 해외진출 효과

심사 기준	비중(%)
단체의 국제교류 역량 및 중장기 발전에 미치는 정도	30
해외초청기관과의 인지도 및 초청조건의 적절성	30
사업계획의 타당성, 충실성, 실행가능성	20
신청사업의 국내외 파급효과	20

## □ 결과발표

- 발표일 : 2024년 4월 3주~4주 중 예정
- 발표방법 :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, 선정단체 개별 공지

## □ 지원제한 대상 및 사업

- 기획재정부의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7조(보조사업자 선정 기준) 제4항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
- 문화체육관광부의 「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」 제10조(보조금 교부조건) 제1항 제1호 바~사목에 해당하는 단체 및 개인
- 「예술인권리보장법」 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다만, 「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)
-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

-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능한 단체
-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, 부정수급·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
-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
-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국내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지원금을 교부받는 사업
- 국·공립(도, 시, 군립) 및 그 산하 출연단체 사업
- 초·중·고·대학생만으로 구성된 단체사업(아마추어 단체 사업 포함)
- 학교, 학원, 종교기관,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사업
- 단체가 아닌 개인이 지원하는 사업
- 해외 초청기관이 한국공연예술단체에게 공연료를 제공하지 않는 사업 및 쇼케이스
- 한국 측에서 극장을 대관하여 진행하는 사업
- 1개 공연예술단체의 1개 해외공연장 초청사업(개막작 혹은 폐막작 등 주요 무대에서 소개하는 경우 제외)
- 상업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단체 사업
- 해외 한인회 등에서 교민 대상 개최하는 사업

## □ 문의

-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해외진출팀
- 이메일 : csk@gokams.or.kr
- 전화 : 02-708-2283